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458호 2023. 7. 17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○ 하천점용허가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3-101호)

공 고

○ 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3-994호)

○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3-997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(전화 650-6065)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7월 17일

예 천 군 수

구 분	하천점용허가
하 천 명	한천(지방하천)
점 용 자 주 소	예천군 체육사업소장
위 치	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-1번지
점용면적	35.6㎡
점용목적	공작물의 신축
사업개요	이용객 편의시설(물놀이장 썬쉐이드)
점용기간	2023년 7월 17일 ~ 2023년 8월 30일

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17일

예 천 군 수

1. 폐지이유

- 「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」 및 「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」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 법령이 폐지(1994.12.31. 및 1998.04.15.)됨에 따라 조례 존치 근거 상실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‘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’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」 폐지

3. 폐지조례안 : 붙임과 같음

4. 의견제출

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행정지원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kjy1907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행정지원실

3) 팩스 : 054-650-608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(전화 : 054-650-683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조례 제 호

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

예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17일

예 천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간외근무시간 연가로 전환 조항 신설 (안 제24조)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적용
-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
-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해 마지막날 기준으로 이월·저축할 수 있도록 함.

나.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‘준용’ 조항 신설 (안 제25조)

-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

3. 개정조례안 : 붙임과 같음

4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행정지원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kjy1907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행정지원실

3) 팩스 : 054-650-608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(전화 : 054-650-683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를 제26조로 하고,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25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4조(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)</u> <u>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</u> <u>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</u> <u>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</u> <u>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</u> <u>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</u> <u>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5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</u> <u>아니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 복</u> <u>무규정」을 준용한다.</u>
<u>제24조 (생 략)</u>	<u>제26조 (현행 제24조와 같음)</u>